

분쟁대상 수산종자

[] 시험·분석
[] 시료채취
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년
신청인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
	주 소	
	업체명	전화번호
생산·판매한 수산종자생산업자	상 호	수산종자생산업 등록번호
	주 소	전화번호
수산종자에 관한 사항	수산종자의 학명 및 일반명	품종의 명칭
	수산종자 구입량	수산종자 구입 시기
입식일 또는 채란일·채묘일		
분쟁의 내용		

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34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

구비물품	수산종자시료(시험·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시험·분석 ◦ 신청: 품종당 1천5백원 ◦ 재배시험(현지시험): 50만원 ◦ 유전자분석: (수산식물) 품종당 30만원 (수산동물) 마리당 3만원 ◦ 수산종자 품질분석: 수산종자시료당 5만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작성방법

1.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[] 시험·분석, [] 시료채취 중 해당란에 표시(√)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.
2. "주소"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,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[예] ○○도 ○○시(군) ○○동(면) ○○로 ○○(△△△△△)
* 시·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.(서울특별시→서울, 충청북도→충북)
3. "생산·판매한 수산종자생산업자"란 중 "상호"란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.
4. "수산종자의 학명 및 일반명"란에는 수산종자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[예] 학명: *Pyropia yezoensis* 일반명: 방사무늬김 / 학명: *Paralichthys olivaceus* 일반명: 넙치
5. "수산종자 구입량"란 및 "수산종자 구입 시기"란에는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서 구입한 물량과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.
6. "분쟁의 내용"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,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.
7.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·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,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